

의안번호	2216249
의 퇴 인	권향엽의원
회 답 일	2026. 3. 5.
추계번호	26B004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3,800만원(연평균 2,8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관 운영 및 연구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21조의3제1항)	138	—	—	—	—	138	28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설	연구회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제1항)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의무규정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설	기본계획 수립(제1항)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기본계획 시행 예산 지원(제2항)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기본계획에 담길 정책 방향과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재 국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출연)하고 있음 ※ [참고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 현황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¹⁾은 국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국가가 매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사업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현행법²⁾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는 매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사업 및 운영 경비를 지원(2026년 기준 3,608억원)하고 있음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1조의3제1항)
 - 개정안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실시한 유사 연구용역(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정책 개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
 - 연구용역은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개정안에 따라 5년마다 실시

1) 안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표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실시년도	예산
과학기술계 출연(연) 혁신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제안을 위한 연구용역	2021	60
출연(연) 기술전략 Foresight 프로젝트 실행지원 및 기획·성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2021	200
국가 미래대비 출연(연) 중장기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2022	90
출연(연) 중심 과학기술계 정책어젠다 발굴·분석 및 혁신방안 제안 연구를 위한 용역	2025	200
평 균		13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3,800만원(연평균 2,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관 운영 및 연구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38	-	-	-	-	138	28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 본 추계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247,439	360,84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95,657	96,1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시설 지원	836	83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203,744	244,00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설 지원	13,869	7,46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75,726	79,91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시설 지원	9,925	4,4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94,484	105,59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시설 지원	4,393	2,748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53,669	61,175
한국한의학연구원 시설 지원	8,500	1,17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02,966	112,47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시설 지원	2,098	2,09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97,218	110,90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설 지원	2,437	4,537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9,942	10,4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16,405	149,82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설 지원	9,688	3,16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12,587	169,2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설 지원	2,831	2,83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90,024	97,53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시설 지원	600	600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44,029	49,548
한국식품연구원 시설 지원	500	1,500

세부사업명	2025	2026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70,042	85,485
한국기계연구원 시설 지원	1,792	2,292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일반회계)	83,863	99,509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5,264	24,007
한국화학연구원 시설 지원	2,516	9,716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32,704	35,111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시설 지원	2,300	2,3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66,604	86,43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 지원	1,039	1,88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57,455	64,37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설 지원	2,025	2,025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16,214	20,785
세계김치연구소 시설 지원	350	550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54,061	171,326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 지원	11,594	15,4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96,119	103,47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시설 지원	5,504	5,504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62,548	73,065
한국전기연구원 시설 지원	1,254	1,25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83,524	93,92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설 지원	6,090	6,858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47,636	56,196
한국재료연구원 시설 지원	995	1,365